

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 안 자 : 운영위원장</p> <p><b>I. 주 문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li> </ol> <p><b>II. 제안경위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</li> <li>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’97.2.26)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.</li> </ol> <p><b>III. 제안이유</b></p> <p>’91.7.8.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’95.7.12.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아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 및 건의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,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 안 자 : 운영위원장</p> <p><b>I. 주 문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해대책관련 업무지원 또는 처리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li> </ol> <p><b>II. 제안경위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와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li> </ol> <p><b>II. 제안경위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</li> <li>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’97.2.26)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.</li> </ol> <p><b>III. 제안이유</b></p> <p>’91.7.8.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’95.7.12.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아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 및 건의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,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</p> <p>제안년월일 : 1997.2.26. 제 안 자 : 운영위원장</p> <p><b>I. 주 문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해대책관련 업무지원 또는 처리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li> </ol> <p><b>II. 제안경위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영위원회 차성환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</li> </ol>
---	--